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울릉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11.

□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4	10	1	17,574	5	205,905	2	130,950
1	○ ○ 과	●●●●관 결원에 따른 인사운영 부적정	-	1	-	-	-	-	-	-
2	○ ○ 과	승진예정 직급조정 및 승진임용 관련	-	1	-	-	-	-	-	-
3	○ ○ 과	5급 승진의결자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및 승진임용 부적정	-	1	-	-	-	-	-	-
4	● ● 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	-	1	-	-	-	-	-	-
5	◎ 면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	1	-	-	-	-	-	-
6	◇ ◇ ◇ ◇ 과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1	-	-	-	-	-	-	-
7	● ● 과 등	공유재산 관리 소홀(기관경고)	1	-	-	-	-	-	-	-
8	◆ ◆ ◆ ◆ ◆ ◆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	1	-	-	-	-	-	-
9	● ● 과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1	-	-	-	-	-	-
10	□ □ □ □ 과	영농조합법인 선정 지원조건 확인 업무 소홀	1	-	-	-	-	-	-	-
11	■ ■ ■ ■ 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추진 부적정	1	-	-	-	-	-	-	-
12	△ △ △ △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운영관리 부적정	-	1	-	-	-	-	-	-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13	△ △ △ △ 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 소홀	-	1	-	-	-	-	-	-
14	□ □ □ □ 과	산지전용기간 만료지 사후관리 소홀	1	-	-	-	-	-	1	1,000
15	▲ ▲ ▲ ▲ 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	-	-	-	-	-	-
16	▲ ▲ ▲ ▲ 과	○○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55,730	-	-
17	▲ ▲ ▲ ▲ 과	◁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34,441	-	-
18	△ △ △ △ 과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89,939	-	-
19	■ ■ ■ ■ 과	◎◎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17,315	-	-
20	▲ ▲ ▲ ▲ 과 ▽ ▽ ▽ ▽ 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청구 등 정산 소홀	1	-	1	17,574	-	-	-	-
21	▽ ▽ ▽ ▽ 과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8,480	-	-
22	▽ ▽ ▽ ▽ 과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	1	-	-	-	-	-	-
23	▼ ▼ ▼ ▼ ▼ 과	◆ ◆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24	▽ ▽ ▽ ▽ 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1	-	-	-	-	-	1	129,95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 결원에 따른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결원직급의 승진임용을 위하여 울릉군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 요구하여 울릉군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절차를 이행 하고 있다.

1. ●●●●관 결원 직급 불부합 승진 의결 요구 및 승진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울릉군 ◇◇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장은 지방●●●●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18. 8. 24. 조직개편에 따른 ●●●●관 1명 증원(○○○○○○○○ 소장)에 따라 2018. 8. 27.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요구하며 ●●●●관 단수 결원에 □□□□사만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할 수 없을 경우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심의·의결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8. 24. 조직개편에 따른 ●●●●관 1명 증원(○○○○○○○○ 소장)에 따라 2018. 8. 27.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요구하며 ●●

●●관 결원에 ◇◇6급, ◆◆6급, ●●관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하여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관 단수 결원에 의결할 수 없는 ◆◆6급 A를 의결하여 2018. 12. 14. 승진임용 하였다.

2. ○○○○○○ 소장 ●●●●관 단수 결원에 승진할 수 없는 다른 직급 승진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며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 배수의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 또는 4개 이하의 여러 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19. 6. 19., 2020. 12. 28. 울릉군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구하며 ◆◆5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 ●●●●관의 단수 결원에 대하여 □□□□사를 ●●●●관 승진의결 심의 대상으로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6. 19., 2020. 12. 28. 울릉군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구하며 ◆◆5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 ●●●●관의 단수 결원에 대하여 □□□□사를 ●●●●관 승진의결 심의 대상으로 요구하여야 함에도, 2019. 6. 19. 울릉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요구자료에 5급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현황에 □□□□사를 제외한 ◇◇ 4명, ■■ 1명, △△ 1명, ▲▲ 2명을 승진

의결인원으로 자료 제공하여 요구자료와 같이 ◇◇ 4명, ■■ 1명, △△ 1명, ▲▲ 2명을 5급으로 승진 의결하여 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 B를 ●●●●관으로 의결하지 않았고,

2020. 12. 28. 울릉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요구자료에 5급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에 □□□□사를 제외한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을 승진의결인원으로 자료 제공하여 요구자료와 같이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을 5급으로 승진 의결하여 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 B를 ●●●●관으로 의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예정 직급조정 및 승진임용 관련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2018. 7. 1.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직렬별 승진예정 직급을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울릉군 인사위원회에 해당직렬의 승진 심사를 사전의결 요청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1. 직급별 정·현원 관리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보직관리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6급 이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①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②자진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③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심사 ④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⑤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⑥민간 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연장 승인 ⑦우대승진임용 및 근속승진임용 ⑧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18. 7. 1.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직급별로 정·현원을 관리하여 해당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한 후 변경된 직급의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7. 1.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직급별 정·현원을 관리하지 않았고, 2019. 6. 19.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심사·의결 시 직급별 발생한 결원을 파악한 후 발생한 직급별 결원의 모든 복수정원을 승진 대상자로 하여 제출하고 임용권자로부터 5급 이상 승진임용(직렬)방침 결정을 받아 최종 결원직급을 결정하고 울릉군 인사위원회에 결정된 직급에 대한 승진 심의·의결 요구하여 임용권자의 방침에 따른 결원직급의 대상자들을 승진자로 의결 받았다.

또한 매번 인사마다 직급별 발생한 결원을 파악한 후 발생한 직급별 결원의 모든 복수정원을 승진 대상자로 하여 부군수 또는 군수 결재를 받아 승진 예정 직급을 결정한 후 울릉군 인사위원회에 결정된 직급에 대한 승진 심의·의결 요구하여 부군수 또는 군수결재에 따른 결원직급의 대상자들을 승진자로 의결 받았다.

2. 결원의 신속 보충 미이행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20. 6. 30. 정년퇴직한 ●●5급 C와 2020. 7. 1. 공로연수한 ◎◎5급 D의 5급 자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결원보충방법에 따라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6. 30. ●●5급 C가 정년퇴직함에 따른 결원과, 2020. 7. 1. ◎◎5급 D의 공로연수에 따른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다수의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진할 수 있는 ●●5급 1명과, ◎◎5급 1명의 승진을 지연하였다.

3. 승진예정직급 직렬조정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며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 배수의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 또는 4개 이하의 여러 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20. 12. 28. 5급 승진의결 요구하며 ◇◇5급 E의 결원에 직권하위 계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6급 F와 ◇◇6급 G 중 1명을 승진임용하여야 했으며, ◇◇5급과 ◆◆5급이 복수정원이 없어 ◆◆5급으로 승진예정직급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12. 28. ◇◇5급 E의 결원에 직권하위 계급에 ◇◇6급 F와 ◇◇6급 G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승진임용 할 수 있음에도 ◇◇5급 결원을 ◆◆5급으로 승진예정 직급을 조정하여 승진할 수 없는 H를 승진임용 하였다.

[표] 승진예정 직급조정 현황

승진 심사일	승진임용 직 급	결원발생			승진의결자	
		사 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2018.08.27	○○6	승진후속	□□	J	○○7	S
	○○6	공로연수	□□	K	○○7	U
	□□5	증원	■ ■	-	□□6	J
	●●5	증원	○○, ▲▲	-	●●6	C
2018.12.27	○○6	승진후속	□□	J	○○7	V
	△△6	육아휴직	◆◆	L	△△7	W
	△△6	명예퇴직	▼▼	M	△△7	X
2019.06.19	▽▽5	공로연수	●●	N	▽▽6	Y
	○○5	승진후속	□□	P	○○6	Z
2019.12.27	△△6	승진후속	○○	Q	△△7	AA
2020.02.12	○○6	명예퇴직	▼▼	R	○○7	AB
	○○6	승진후속	☆☆	S	○○7	AC
2020.12.28	□□5	승진후속	○○	T	□□6	AD
	◆◆5	명예퇴직	◇◇	E	◆◆6	H

조치할 사항 율령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5급 승진의결자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및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승진시험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19. 6. 19.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6급 AE 외 3명을 2019. 8. 16. ●●5급 2명 결원에 대하여 승진임용하며, 2020. 12. 28.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6급 AJ 외 4명을 2021. 2. 26. ●●5급 4명 결원에 대하여 승진임용하며 승진의결된 횟수별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5급 승진 임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6. 19.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6급 AE 외 3명에 대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을 선정하며 AE가 나이가 많은 사람 AF, AH에게 교육순위를 양보하였고 차순위 교육대상자인 AG에게 2019년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2019년 제7·8기 5급 승진 리더교육 포기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제출 받았다.

[표] ●●5급 승진임용 현황

연번	심의일자	직급	성명	의결당시 명부순위	교육수료 일 자	교육수료후 명부순위	심의횟수별 명부순위	5급 승진 임용일자	5급승진 순 서
1	'19.06.19.	●●6	AE	1	'19.10.04.	1	2	'20.01.01.	3
			AF	2	'19.08.16.	1	1	'19.08.16.	1
			AG	4	'19.10.04.	2	3	'20.01.01.	3
			AH	5	'19.08.16.	2	4	'19.08.16.	1
2	'20.12.28.	●●6	AI	1	'21.02.26.	1	1	'21.02.26.	1
			AJ	2	'21.03.26.	1	2	'21.07.01.	5
			AK	3	'21.02.26.	2	3	'21.02.26.	1
			AL	5	'21.02.26.	4	5	'21.02.26.	1
			AM	6	'21.02.26.	3	4	'21.02.26.	1

이에 따라 2019년 제7기 5급승진리더과정(7. 8. ~ 8. 16.)에 의결 당시 명부순위 2위 AF와 5위 AH가 먼저 교육수료하게 되었고, 명부순위 1위 AE와 4위 AG는 2019년 제9기 5급승진리더과정(8. 26. ~ 10. 4.)을 나중에 교육수료하여 2019. 6. 19. 심의의결횟수에 의결자들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19 8. 16. 발생한 ●●5급 2명 결원에 심의횟수별 명부순위가 높은 2위 AE와 1위 AF를 5급 승진임용하여야 함에도 울릉군 ○○과에서는 교육수료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19. 8. 16. 결원에 심의횟수별 명부순위 1위 AF와, 4위 AH를 승진임용 하였다.

또한 2020. 12. 28. 심의에 의해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6급 AJ 외 4명에 대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을 선정하며 AJ에게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교육포기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2021년 제2기 5급승진리더과정(1. 25. ~ 2. 26.)에 의결 당시 명부 순위 1위 AI, 3위 AK, 5위 AL, 6위 AM이 먼저 교육수료하게 되었고 명부순위 2위 AJ는 2021년 제3기 5급승진리더과정(2. 22. ~ 3. 26.)을 나중에 교육수료하여 2021. 3. 26. 심의의결횃수에 의결자들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21 2. 26. 발생한 ●●5급 4명 결원에 심의횃수별 명부순위가 높은 1위 AI와 2위 AJ, 3위 AK, 4위 AM을 5급 승진임용하여야 함에도 울릉군 ○○과에서는 교육수료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21. 2. 26. 결원에 심의횃수별 명부순위 1위 AI, 3위 AK, 4위 AM, 5위 AL을 승진임용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울릉군 〇〇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대부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〇〇과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를 거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3개 단체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상 사용허가 하였고, ☆☆ 등 3개 단체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무상 사용허가 하였다.

[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미이행 및 사용료 부담 감면내역

(단위 : 천 원)

사용허가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무상사용 허가기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여부	부 당 면제액
	소재지	용도	면적(㎡)			
13개 단체						42,171
○○	◁△읍 ◀◀로 ㄱ	건물	27.9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로 ㄱ	건물	72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로 ㄱ	건물	36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로 ㄱ	건물	27.9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로 ㄱ	건물	54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로 ㄱ	건물	81.9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로 ㄱ	건물	27.9	2020. 1. 15. ~ 2025. 1. 14.	부	-
△△	◁△읍 ▷▷길 ㄴ	건물	40.06	2019. 1. 15. ~ 2022. 1. 14.	부	-
▲▲	◁△읍 ▷▷길 ㄷ	건물	53.8	2019. 3. 1. ~ 2022. 2. 28.	부	-
▽▽	◁△읍 ▷▷길 ㄹ	건물	54	2019. 8. 8. ~ 2024. 8. 7.	부	-
☆☆	◁△읍 ▶▶길 ㄹ	건물	54.37	2017. 3. 27 ~ 2022. 3. 26.	부	17,969
▼▼	◁△읍 ▷▷길 ㄴ	건물	27.7	2019. 6. 2. ~ 2024. 6. 1.	부	2,961
		건물	31.68		부	3,386
★★	◁△읍 ▶▶길 ㄹ	건물	54.02	2017. 3. 27 ~ 2022. 3. 26.	부	17,855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부당면제액 산출 포함)

그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게 면제하여 42,171천 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면
내 용	

울릉군 ◎면에서는 「농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고 취득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되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전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¹⁾(이하 “사업범위”라

1) ① 영농조합법인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농업회사법인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한다)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면에서는 농업법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심사 확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에서 “태양광발전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 해산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서류 심사 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해 준 결과 2개 농업법인이 농지 14필지 20,741㎡를 부당하게 소유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표]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내역

연번	법인명	발급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 고
			소재지	면적(㎡)		
계			14필지	20,741		
1	○○주식회사	2019. 7. 2.	울릉군 ◎면 ◇◇리 ㄴ~ㄷ	11,081	태양광발전업	
2	●●주식회사	2020. 3. 9.	울릉군 ◎면 ◆◆리 ㄹ, ㅁ, ㅂ~ㅎ, ㄱ	9,660	부동산임대업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기간 중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면 ◇◇리 ㄴ번지 등 14필지는 당초 농업경영의 목적과는 달리 농지로써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II. 기초연금의 지급, 1. 지급방식에 따르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읍 AN 등 16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월이 아닌 결정월부터 지급하여 기초연금 3,778천 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기초연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읍 면	신청인	신청일자	결정일자	급 여 개시일	산정액	미지급 개월수	미지급액
계							20	3,778,440
1	○○읍	AN	2017.02.09.	2017.03.21.	2017.04.25.	206,050	1	206,050
2	-	-	2017.02.09.	2017.03.21.	2017.04.25.	164,840	2	329,680
3	-	-	2017.02.09.	2017.03.21.	2017.04.25.	136,040	1	136,040
4	-	-	2017.02.14.	2017.03.27.	2017.04.25.	206,050	1	206,050
5	-	-	2017.02.16.	2017.03.27.	2017.04.25.	164,840	2	329,680
6	-	-	2017.02.20.	2017.03.27.	2017.04.25.	206,050	1	206,050
7	-	-	2017.02.22.	2017.04.26.	2017.05.25.	206,050	1	206,050
8	-	-	2017.04.04.	2017.05.23.	2017.06.23.	206,050	1	206,050
9	-	-	2017.04.05.	2017.05.23.	2017.06.23.	134,690	1	134,690
10	-	-	2017.04.06.	2017.05.23.	2017.06.23.	206,050	1	206,050
11	-	-	2017.04.06.	2017.05.23.	2017.06.23.	164,840	1	164,840
12	-	-	2018.01.05.	2018.02.12.	2018.02.23.	169,980	1	169,980
13	-	-	2018.01.09.	2018.02.14.	2018.02.23.	206,050	1	206,050
14	-	-	2018.04.04.	2018.05.17.	2018.05.25.	209,960	1	209,960
15	-	-	2018.09.05.	2018.11.30.	2018.12.24.	203,740	3	611,220
16	-	-	2018.10.31.	2018.11.30.	2019.01.25.	250,000	1	250,000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소 지급된 기초연금 3,778천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 소홀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〇〇과 등
내 용

울릉군에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에서는 총괄재산관리부서인 〇〇과로부터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을 통보²⁾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등록하여야 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2020. 11. 3.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등기 미등록 현황을 아래 [표 1]과 같이 문서로 통보 받고도 감사일 현재 (2021. 9. 7.)까지 100개소의 공유재산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 〇〇과-23708(2020. 11.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 통보 및 추진실적 제출”

[표 1] 등기 미등록 현황 및 조치결과

(단위 : 개소)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공문통보(2020. 11. 3.)에 따른 결과	향후 조치대상
등기 미등록 현황	100	0	100

2.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지에 대한 조치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2020. 11. 3.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무단 점유 점검대상 목록을 아래 [표 2]와 같이 문서로 통보 받고도 감사일 현재(2021. 9. 7.)까지 179필지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사 기간 중 현장을 점검 한 결과 3면 111리 7번지 내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무단점유 점검대상 조치결과

(단위 : 필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공문통보(2020. 11. 3.)에 따른 결과	향후 조치대상
무단점유 점검대상	179	0	179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울릉군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 등기·등록하시기 바라며, 무단점유 의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릉군 ◆◆◆◆◆◆◆◆에서는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업무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체결 현황

입찰공고일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천 원)	개찰순위	계약상대자
2019. 4. 26.	2019. 5. 10.	384,540 (1,479원 × 260,000ℓ)	1	★★

1.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³⁾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3)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5억 원(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에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경상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울릉군 관내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2.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 8.)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⁴⁾ 이상인

4)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2018. 12. 19.))

물품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서류 중 입찰 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에서는 추정가격 약 379백만 원⁵⁾인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1순위 입찰자인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계약담당자를 통해 ★★에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울릉군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5)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 물량을 곱한 금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 추정가격 : 1,459원 정도(추정단가) × 260,000(예정물량) = 379,000,000원 정도

※ 추정단가는 기초금액 1,605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표 2] 2019년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적격심사 결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종합평점	비고
계		100	61.1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물품구매 만점
	경영상태	30	0	최저점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보유)
입찰가격		60	49.1	투찰률 93.449%
신 인 도		+2 ~ -2	2	임의로 배점한도 부여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울릉군 〇〇과에서는 지연배상금 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장 제8절 “1-바”에 따르면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〇〇과에서는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6. 18. 아래 [표]와 같이 ‘〇〇사업’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확정 결정⁶⁾하면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이 아닌, 준공신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였고, 그 결과 10,193,400원의 지연배상금이 과소 부과되었다.

[표] ‘〇〇사업’ 지연배상금 산정 내역

(단위 : 원)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신고서 제출일	준공검사일	지연배상금 산정					과소부과액 (B-A)
					구분	지체기간	감면일수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⁷⁾	
◀◀ 주식회사	1,132,600,000	'18. 10. 17.	'19. 1. 23.	'19. 2. 1.	부적정	'18. 10. 18. ~ '19. 1. 23. (98일간)	35일 ⁸⁾	63일	71,353,800 (A)	10,193,400
					적정	'18. 10. 18. ~ '19. 2. 1. (107일간)		72일	81,547,200 (B)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〇〇과-13292(2019. 6. 18.), “지연배상금 확정 결정 통보”

7)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0.1%) × 지체일수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기간으로 35일을 산정하여 지체일수에서 감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영농조합법인 선정 지원조건 확인 업무 소홀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표 1] ●●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자(대표자)	사 업 비(천 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366,230	73,246	28,874	67,372	196,738	
'18 ○○ 지원사업	◇◇ 영농조합법인(AO)	136,230	27,246	8,174	19,072	81,738	
'20 ●● 지원사업	◇◇ 영농조합법인(AO)	230,000	46,000	20,700	48,300	115,000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 제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
3.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4.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5.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6.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7. 사업부지는 다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식품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총출資금이 1억 원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영농조합법인(대표 AO)에 대해 2회에 걸쳐 보조사업 대상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였다.

[표 2]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 업 명	사업자(대표자)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비고
		출자금(백만 원)	조합원수	운영실적(설립일자)	
'18 ○○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AO)	부(30)	여(7명)	여('05.10.27.)	
'20 ●●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AO)	부(30)	여(7명)	여('05.10.27.)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2020년 ●● 지원사업’의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하여 지급된 보조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업무 소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총 31건을 처리하면서 28건에 대해서는 그 허가내용을 공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지 않는 등 고시이행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현황

허가·협의 연월일	위치	면적(㎡)	허가대상	점용사용기간	비고
계	31건(28건 미고시)	(3건 고시)			
‘21.2.25.	—	697,161	—	‘21.2.25.~ ‘26.2.24.	고시 (실시계획)
‘21.6.4.	—	22	—	‘21.6.4.~ ‘51.6.3.	“
‘20.12.28.	—	1,117	—	‘21.4.26.~ ‘36.4.25.	“
‘21.7.26.	—	90	—	‘21.7.28.~ ‘22.7.27.	미고시
‘21.7.5.	—	2,700	—	‘21.9.1.~ ‘21.9.30.	“
‘21.4.26.	—	20	—	‘21.4.26.~ ‘36.4.25.	“
‘21.4.5.	—	85	—	‘21.4.5.~ ‘21.5.4.	“
‘21.2.19.	—	14,570	—	‘21.5.1.~ ‘24.5.1.	“
‘21.2.17.	—	961	—	‘21.1.1.~ ‘21.12.31.	“
‘21.1.25.	—	15,128	—	‘21.2.12.~ ‘26.2.11.	“
‘21.1.21.	—	3,735	—	‘21.1.1.~ ‘21.12.31.	“
‘20.12.28.	—	8	—	‘21.1.1.~ ‘25.12.31.	“
‘20.8.21.	—	1,306	—	‘20.8.24.~ ‘25.8.23.	“
‘20.7.28.	—	90	—	‘20.7.28.~ ‘21.7.27.	“
‘20.7.3.	—	252	—	‘20.7.15.~ ‘50.7.14	“
‘20.7.27.	—	675	—	‘20.7.28.~ ‘50.7.27.	“
‘20.7.2.	—	10,000	—	‘20.7.2.~ ‘21.10.17.	“
‘20.7.3.	—	66	—	‘20.7.3.~ ‘20.10.30.	“
‘20.6.1.	—	7,619	—	‘20.6.1.~ ‘21.5.31.	“
‘20.4.8.	—	500	—	‘20.4.9.~ ‘20.6.30.	“
‘19.12.27.	—	90,000	—	‘19.1.1.~ ‘22.12.31.	“
‘19.12.27.	—	3,735	—	‘20.1.1.~ ‘20.12.31.	“
‘19.12.27.	—	3,785	—	‘20.1.1.~ ‘20.12.31.	“
‘19.12.27.	—	90	—	‘20.1.1.~ ‘20.12.31.	“
‘19.5.24.	—	20	—	‘19.5.27~‘24.5.26.	“
‘19.5.24.	—	30	—	‘19.5.27~‘24.5.26.	“
‘19.5.24.	—	66	—	‘19.5.14.~ ‘19.10.31.	“
‘19.5.23.	—	8	—	‘19.5.23.~ ‘29.5.22.	“
‘19.4.18.	—	66	—	‘19.4.18.~ ‘19.10.30.	“
‘19.4.8.	—	8,420	—	‘19.4.~ ‘19.12.	“
‘19.2.19.	—	90	—	‘19.2.5.~ ‘19.12.31.	“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록면허세 납세 확인 소홀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아래 [표 2]와 같이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 1]에 개별법의 점용허가 면적(1,500㎡ ~ 50㎡)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 등록면허세 구분(지방세법 제34조)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비고
군 지 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부과대상	1,500㎡이상	1,000㎡이상 ~ 1,500㎡미만	500㎡이상 ~ 1,000㎡미만	제1종 ~ 제3종 외 50㎡이상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면허 부여·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 확인을 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 등록면허세 531천 원이 부과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록면허세 미부과 내역

허가일자	위 치	면허세액(원)	면적(㎡)	허가대상	점용사용기간	비고
계	32건	531,000	366,962			
'20.12.28.	-	18,000	1,117	-	'21.4.26.~ '36.4.25.	
'21.7.26.	-	9,000	90	-	'21.7.28.~ '22.7.27.	
'21.7.5.	-	27,000	2,700	-	'21.9.1.~ '21.9.30.	
'21.2.17.	-	12,000	961	-	'21.1.1.~ '21.12.31.	
'21.1.25.	-	27,000	15,128	-	'21.2.12.~ '26.2.11.	
'21.1.21.	-	27,000	3,735	-	'21.1.1.~ '21.12.31.	
'20.7.28.	-	9,000	90	-	'20.7.28.~ '21.7.27.	
'20.7.3.	-	9,000	66	-	'20.7.3.~ '20.10.30.	
'20.6.1.	-	27,000	7,619	-	'20.6.1.~ '21.5.31.	
'20.4.8.	-	12,000	500	-	'20.4.9.~ '20.6.30.	
'19.12.27.	-	27,000	3,735	-	'20.1.1.~ '20.12.31.	
'19.12.27.	-	27,000	3,785	-	'20.1.1.~ '20.12.31.	
'19.12.27.	-	9,000	90	-	'20.1.1.~ '20.12.31.	
'19.5.24.	-	9,000	66	-	'19.5.14.~ '19.10.31.	
'19.4.18.	-	9,000	66	-	'19.4.18.~ '19.10.30.	
'19.2.19.	-	9,000	90	-	'19.2.5.~ '19.12.31.	
'18.12.17	-	27,000	3,735	-	'19.01.01~'19.12.31	
'18.12.17	-	27,000	3,785	-	'19.01.01~'19.12.31	
'18.12.17	-	27,000	59,313	-	'18.12.19~'19.01.18	
'18.06.01	-	27,000	3,785	-	'18.06.01~'18.12.31	
'18.05.08	-	9,000	66	-	'18.05.08~'19.04.30	
'18.05.08	-	9,000	66	-	'18.05.08~'18.10.30	
'18.03.22	-	9,000	66	-	'18.03.22~'18.10.31	
'18.02.13	-	9,000	90	-	'18.02.05~'19.02.04	
'18.02.12	-	27,000	250,000	-	'18.04.01~'18.08.30	
'17.12.04	-	12,000	961	-	'17.12.02~'18.12.01	
'17.06.26	-	9,000	66	-	'17.06.26~'17.09.30	
'17.06.07	-	9,000	100	-	'17.06.07~'17.11.30	
'17.05.31	-	27,000	3,735	-	'17.06.01~'18.05.31	
'17.05.19	-	9,000	66	-	'17.05.19~'17.10.30	
'17.02.28	-	18,000	1,200	-	'17.02.28~'17.04.30	
'17.02.17	-	9,000	90	-	'17.02.05~'18.02.04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부과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시장·군수는 소비자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소비자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감시원이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거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했고, 소비자감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매년도의 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및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했으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소비자단체가 아닌 ○○ 등 2개의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소비자감시원 신청을 받았음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채 교육 미이수자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였고, 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비자감시원 업무수행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감시원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소비자감시원 위촉현황

연도	소속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감시활동 기간
2018	●●	AP	-	2017.10.1. ~ 2019.09.30.
	개인	AQ	-	2017.10.1. ~ 2019.09.30.
	개인	AR	-	2018.07.25. ~ 2020.07.24.
2019	●●	AP	-	2017.10.1. ~ 2019.09.30.
	개인	AQ	-	2017.10.1. ~ 2019.09.30.
	○○	AS	-	2019.10.7. ~ 2021.10.7.
	○○	AT	-	2019.10.7. ~ 2021.10.7.
	○○	AU	-	2019.10.7. ~ 2021.10.7.
	○○	AV	-	2019.10.7. ~ 2021.10.7.

연도	소속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감시활동 기간
2020	○○	AS	-	2019.10.7. ~ 2021.10.7.
	○○	AT	-	2019.10.7. ~ 2021.10.7.
	○○	AU	-	2019.10.7. ~ 2021.10.7.
	○○	AV	-	2019.10.7. ~ 2021.10.7.
	개인	AW	-	2017.9.22. ~ 2021.9.21.
2021	○○	AS	-	2019.10.7. ~ 2021.10.7.
	○○	AT	-	2019.10.7. ~ 2021.10.7.
	○○	AU	-	2019.10.7. ~ 2021.10.7.
	○○	AV	-	2019.10.7. ~ 2021.10.7.

※ 울릉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 소홀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2]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1개월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품의 거래기록과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생산 및 작업 기록과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15일 또는 5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유해물질 사용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과 기록물 보관 여부 등 업소의 제조·가공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5. 17.부터 6. 4.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61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⁹⁾ 아래 [표]와 같이 ■■ 등 22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실을 확인¹⁰⁾하고도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갈음하였다.

9) 점검대상 61개소 : 양호 23개소, 위반 22개소(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18, 자가품질검사 위반 4), 미실시(휴업) 16개소

10) 울릉군 △△△△과-20461(2021. 6. 7.), “2021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결과보고”
(점검기간 : 2021. 5. 17. ~ 6. 4., 점검반 ●●팀장 외 2명)

[표] 2021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위반행위	비고
1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등	* 가공업자 준수사항 1차 위반 시 영업정지15일 또는 5일 * 자가품질검사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처분 1개월
2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등	
3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4	-	제품거래기록 작성보관 위반 등	
5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6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7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8	-	제품거래기록 작성보관 위반 등	
9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등	
10	-	자가품질검사주기 및 항목 미준수 등	
11	-	자가품질검사주기 및 항목 미준수 등	
12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13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14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15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16	-	자가품질검사주기 및 항목 미준수 등	
17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등	
18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19	-	생산 및 작업기록 위반 등	
20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등	
21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작성위반	
22	-	자가품질검사주기 및 항목 미준수 등	

※ 울릉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지전용기간 만료지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업무 및 산지복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산지 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복구의무자가 허가만료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 면적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거나 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거나 대집행 등으로 산지를 복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수허가자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내에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일 현재 산지전용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1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산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대상 복구설계서 미제출 내역

수허가자	산림소재지	허가내역				복구설계서 제출여부	과태료	허가 구분
		면적	시작	종료	허가목적			
계						4건	1,000천 원	
○○	□□읍 ▲▲리 ㄱ	62	'19.6.10.	'20.12.30.	-	미제출	미부과 (250천 원)	협의
	■면 ▽▽리 ㄴ	32						
	■면 ▼▼리 ㄷ	47						
AX	△면 ◁▷리 ㄹ	470	'19.8.16.	'21.7.30.	-	미제출	미부과 (250천 원)	협의
AY	△면 ◀▶리 ㅁ	210	'19.8.16.	'20.8.30.	-	미제출	미부과 (250천 원)	협의
AZ	△면 ◁▷리 ㅂ	331	'20.8.21.	'21.7.31.	-	미제출	미부과 (250천 원)	협의

조치할 사항 율령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법정일 내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허가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추징하고 및 미복구된 산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청문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영업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6장 2.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¹¹⁾(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통보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와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11)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 정보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

아울러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기준일은 기술능력의 경우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로 하고, 자본금은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2018년 실태조사 관련 기술능력 확인 소홀

울릉군 ▲▲▲▲과에서는 2018. 10. 1.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과-6304호)을 통보 받고,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총 18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년도인 2017년 실태조사 통보일이 2017. 9. 29.(국토교통부 ♡♡♡♡과-4950호)임에도 불구하고 (주)○○(대표자 BA)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대표자 BB)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추가 증빙자료 요청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2019. 9. 1.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하였다.

그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출된 증빙자료 상 기술인력 부족으로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건설업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게 되는 등 건설업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 2019년 실태조사 업무 처리 지연

울릉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총 8건)에 대하여 2019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과-6607호)을 통보 받고, 2019. 10. 14.부터 2019. 12. 31.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결재(울릉군 ▲▲▲▲과-22492호)를 득한 후, 해당업체에게 2019. 11. 8.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울릉군 ▲▲▲▲과-22826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표] 2019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현황

업체명	실태조사 내용	국토부 통보일	울릉군 통보일	소명자료 접수일	재조사 통보일	소명자료 재접수일	실태조사 완료일
○○(주)	자본금	2019.9.30.	2019.10.14.	2019.11.11.	2021.4.7.	2021.8.2.	2021.8.24.
(주)◇◇	자본금			2019.11.11.		2021.5.26	2021.6.29.
(주)◆◆	자본금, 기술인력			2019.11.15.		2021.5.27.	2021.8.31.
(주)□□	기술인력			2019.11.11.		2021.6.29.	2021.7.6.
■■■	시설장비			2019.11.15.		2021.4.28.	2021.5.12.
☆☆	시설장비			2019.12.2.		2021.6.30.	2021.7.28.
★★	시설장비			2019.11.11.		2021.8.12.	2021.8.31.

※ 울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지속적으로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1. 16.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건수 총 8건 중 이행 0건으로 조사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행하고, 조사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요청 등 감사조치 할 수 있으니 실태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과-8900호)을 접수 받고도 조사계획 수립이나 심사업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 1. 1. 인사이동으로 실태조사 업무 담당자 변경 후, 2021. 4. 7. 2019년 실태조사 업체에게 재조사 통보(울릉군 ▲▲▲▲과-8412호)를 하고,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21. 8. 31. 2019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 9. 30. 통보된 2019년 실태조사가 2021. 8. 31. 완료되었고, 이미 2019. 11월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2021년도에 다시 제출 받게 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자본금 심사의 경우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규정되어 있어 2018년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2020년 결산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실태조사 소명자료 상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주)○○, ●●(주)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설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주) 대표자 BC와 2019. 12. 13. 공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개설공사	도로확포장 L=1,060m	2,757	1,950	807	2019. 12. 13. ~ 2022. 5. 12.	●●(주) BC	

1.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m²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시공자가 관련법령 및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험실 및 시험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구조물 시공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 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석축 시공 시 시공된 물량 157m 중 56m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뒷채움 잡석 두께 20cm와 채움콘크리트 두께 16cm 만큼 뒷채움을 시공¹²⁾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흙막이벽과 캔틸레버 기둥의 콘크리트 타설 수량 8m³와 유로폼 37m²를 중복으로 계상하여 사업비 3,590천 원, 캔틸레버 슬래브 철근가공 34.435ton과 조립 58.491ton 단가를 보통이 아닌 복잡으로 적용하여 사업비 7,430천 원, 석축 하부 H파일 상단에 콘크리트 기초와 띠장 446.4m, 14.062ton을 중복으로 설치¹³⁾하여 사업비 21,710천 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¹⁴⁾(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

12) 미시공 물량 L=56m, H=1~4m, 미시공 금액 2,230천 원(제경비 포함) 정도

13) 석축 하단부의 콘크리트 기초와 중복으로 설치하는 띠장은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사에서 의견 제출

14)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설공사’의 사토량이 8,202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울릉군 관내 공사현장 별 사토 및 순성토 발생량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울릉군 △△△△과에서 시행하는 ‘■□ 정비사업’으로 사토 운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운반거리가 7km에서 3.4km로 줄어들어 사업비 23,000천 원 (제정비 포함)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토 운반거리 축소 및 흙막이벽 콘크리트 타설 수량 중복 계상 등으로 공사비 55,730천 원(제정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시험실(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 및 토석정보 미입력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석축 뒷채움 미시공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재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또한 과다 계상된 사업비 55,73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주) 대표자 BD와 2018. 12. 13. 공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정비공사	사면보강 1식	3,271	2,923	348	2018. 12. 18. ~ 2021. 7. 30.	♠♠(주) (BD)	(주)♠♠ (BE)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기간 : 2019. 3. 11. ~ 2021. 5. 23.

1.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될 가설공사는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 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1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가설구조물의 공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높이 5미터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8. 12. 18. 제출된 착공신고서에는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없고, 2021. 6월경부터 2021. 7월경까지 해당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울릉군 ▲▲▲▲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확인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2. 용벽 구조물 시공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 4.2(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앵커력(이하 “잔존앵커력”이라 한다)이 인장재의 이완, 정착지반이나 구조물 배면 지반의 변형 등으로 설계앵커력보다 감소하면 억제력을 느슨하게 하여 비탈면 등의 활동 및 붕괴를 방지시킬 가능성이 있고, 잔존앵커력이 수압 등의 영향으로 설계 앵커력보다 증가하면 인장재가 파단되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탈면 등의 관리기관은 잔존앵커력이 설계앵커력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정밀조사하여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상부 옹벽이 설계도서와 상이¹⁵⁾하게 시공되었고, 하부 옹벽에 설치된 앵커 56개소 중 5개소가 잔존앵커력이 유실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부 옹벽 배면 비계 453m² 미시공 사업비 10,670천 원, 옹벽 배면 드레인 보드와 부직포가 중복 계상되어 부직포 914m² 미시공 사업비 3,190천 원, 보조기층 인력품 변경 및 콘크리트 포장 단가에 와이어매쉬 깔기품 500m²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중복으로 계상하여 사업비 4,334천 원, 상부 옹벽 전단키를 마이크로파일로 설계 변경하면서 전단키 L=98.4m를 미감액하여 사업비 11,805천 원, 하부 옹벽 전단키 거푸집 98m² 미시공 사업비 4,442천 원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없이 준공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비탈면 등을 앵커로 보강하고도 설계도서와 상이한 앵커 설치 및 잔존앵커력 상실 등에 따른 비탈면의 활동 및 붕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상부 옹벽 배면 비계 미시공 등으로 공사비 34,441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15) 앵커의 설치간격 및 높이가 0.2m ~ 0.7m 정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됨, 배수구 63공 중 39개 누락 등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하게 시공된 상부 옹벽 및 잔존앵커력이 유실된 하부 옹벽은 정밀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또한 구조물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34,441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주) 대표자 BF와 2020. 9. 29.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정비사업	매립장 10,668㎡ 차수벽 182.5m	3,149	2,127	1,022	2020. 10. 9. ~ 2022. 10. 8.	○○(주) (BF)	(주)●● (BG)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기간 : 2021. 6. 25. ~ 2022. 11. 21.

1.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m²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2020. 10. 9. 착공신고 시 제출된 품질시험 계획서에 대한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건설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품질시험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품질시험계획서를 변경하여 2021. 8. 2.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자도 품질시험 전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서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하였다.

2. 침사지 미설치 등 재해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임시저감시설의 상세 계획 도면을 제시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후 공사 시 본 검토에서 제시된 규모대로 시공하기 바람”이라는 협의의견에 대하여 2020. 12. 1. “재해영향평가서를 토대로 향후 토목, 건축설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임시침사지 겹 저류지의 상세계획도면을 수록하였으며, 공사 시 실제 규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하였음”이라고 조치계획을 공문(울릉군 △△△△과-36240호)으로 ▽▽▽▽과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반영된 공사 중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2개소, 개발 후 침투집수정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관련 행정사항 등은 최근 신설·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수정”하라는 협의의견에 대하여 2020. 12.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서, 협의내용 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등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수정 수록하였음”이라고 조치계획을 공문(울릉군 △△△△과-36240호)으로 ▽▽▽▽과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미제출) 및 개발사업 착공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가배수로와 임시 침사지 설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협의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영향 저감대책 미이행으로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등 토사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3. 비탈면 안전성 검토 부적정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2016. 9. 5.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0호)에 따르면 설계자는 쌓기 비탈면 안정해석 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¹⁶⁾을 초과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독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축대벽은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독은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 정비사업 실시설계보고서에는 건기와 우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안전율 1.3, 지진 시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에 따라 기준안전율 1.1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매립시설 비탈면 설계 시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기준안전율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비탈면 안전성이 확보되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평상 시와 지진 시의 안전성 검토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우기 시 안전성 검토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우기 시 안전성 검토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16) 건기 시 1.5, 우기 시 1.2, 지진 시 1.1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¹⁷⁾(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의 순성토량이 6,387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시 공사현장별 사토 및 순성토 발생량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기 반입된 1,424m³를 제외한 잔여물량 4,963m³에 대하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 개설공사’에서 순성토를 반입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설계적용 운반거리 25km에서 무상반입이 가능하여 사업비 89,939천 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토석정보 미입력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89,939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7)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량	총공사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회사	비 고
○○ 개선사업	해상보도교 L=173.5m 피압시설 L=32.5m	4,562	'20.6.19.	'20. 6. 25. ~ '21. 11. 11. ('21. 8. 18. 중지중)	◇◇(주) BH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건설사업자가 관련법령 및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험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 업무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부실, 미승인 등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향타기, 향받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될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는 굴착, 흙막이, 발파, 향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위 공사의 건설사업자로부터 2020. 6. 25.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향타기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건설사업자에게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확인·검토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없이 승인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천공기, 향타기 사용 공종을 2021. 5. 14.부터 2021. 5. 20.까지 공사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향타기 등의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 시행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평가 미실시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래 [표 2]와 같이 2019. 4. 17. (주)◆◆ BI와 계약하고 2020. 6. 12. 준공하였다.

[표 2] 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용역기간	도급자	비고
○○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479,633	2019. 4. 17.	2019. 4. 18. ~ 2020. 6. 12.	(주)◆◆ (BI)	준공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¹⁸⁾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용역비 2.1억 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그리고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설계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¹⁹⁾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 ■■■■■과에서는 ‘○○○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9. 4. 17. (주)◆◆ BI와 계약하고 2020. 6. 12. 준공하였고, 해당 건설공사인 ‘○○○ 개선사업’을 2020. 6. 19. ◇◇(주) BH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12. 24.까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감독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²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처리지침」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조립·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19)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용역비 2.1억 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2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2020.12.16.))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 확인,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설사무소 9동, 가설창고 3동, 품질시험실 1동을 설계도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가설사무소 1동, 품질시험실 1동만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관련 공사비 17,315천 원을 감액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7,315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청구 등 정산 소홀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²¹⁾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감사관은 “정부합동감사 반복 지적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사용 등) 사례 통보”[감사관-763호('19. 1.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감사 반복 지적사항 알림”[감사관-15592호('19. 11. 4.)]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근로자만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되지 않고 허위 청구 및 정산 등의 사례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감사반복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동비' 합계액의 2.93%~1.38%까지 적용함.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²²⁾’의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²³⁾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기간 중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상기와 같이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 □□(주) BJ는 ‘♣♣ 개선공사’, ■■(주) BK는 ‘♣♣ 증축공사’의 안전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²⁴⁾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울릉군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5건 17,574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 7. 1. 이후)

23)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24)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국세청 홈택스 제3자전자세금계산서 및 자인서를 통해 확인함

[표] 산업안전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제출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금액	제경비	허위부당 청 구 액	비 고
계				13,510	4,064	17,574	5건
▲▲▲▲과	☞ 개선공사	2019. 6. 3. ~ 2020. 11. 26.	□□(주) (BJ)	4,807	1,324	6,131	1건
▽▽▽과	♣ 증축공사	2018. 9. 18. ~ 2019. 4. 8	■(주) (BK)	8,703	2,740	11,443	4건

※ 울릉군 제출자료 참고 작성

그 결과 울릉군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5건의 17,574천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위조 등) 및 수정 발급(취소) 증빙하여 안전관리비를 부당 청구·지급받은 □□(주) BJ, ■(주) BK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람, (시정)
- ③ 아울러 ②사안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허위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17,574천 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주) BL과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정비공사	붕괴위험지역 정비 16,049㎡	4,085	3,902	183	2021. 3. 29. ~ 2021. 9. 24. (7. 26.일시중지)	☆☆(주) BL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시공자가 관련법령 및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품질시험실 타용도 사용 및 시험장비 미구비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및 활용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²⁵⁾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이며,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5)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함

또한 같은 요령 제9조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시기는 설계 준공 시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정보를 갱신하며, 공사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공사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반입·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반출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갱신하며, 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이내 해당 토석정보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준공 시 혹은 공사 착수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을 입력하여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의 사토 발생량이 66,141m³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다른 건설공사에서 토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공사 사토장을 선정하지 못하여 사토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3. 축중기 설치비 미반영

「도로법」 제77조 및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m³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발주되어 운영 중인 현장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축중기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에 따라 정기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토·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축중기 설치 대상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서는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미 발주되어 운영 중인 현장은 설계 변경 시 축중기 설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2021. 3. 16. ‘●●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사토 운반량이 66,141m³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축중기 설치비를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도로 파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폐기물처리 운반비 등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는 폐기물 운반비 213m³ 2,610천 원, 폐기물 상차 비용과 기존구조물 깨기 들어내기 비용을 중복 반영하여 213m³ 1,424천 원 등 총금액 8,480천 원을 과다계상하고도 공사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8,480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읍 ●●리 ㄱ번지의 경우

[표 1] 건축신고 수리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기존 연면적(㎡)	증축 연면적(㎡)	층수	구조	신 고 일	신고수리일	용 도
BM	○○읍 ●●리 ㄱ	169.36	67.26 (50.32초과)	3	경량철골 구조	'21. 5. 13.	'21.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건축법」 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대하여는 신고를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읍 ●●리 ㄱ번지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서에 따르면 증축부분이 지상3층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한 건축허가 대상인데도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위 [표 1]과 같이 부적정하게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건축물 내화구조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인·허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건축주 BM이 ○○읍 ●●리 ㄱ번지 3층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67.26㎡를 증축하면서 내화구조에 미달되는 경량철골조로 건축신고 하였는데도 보완이나 시정요구 없이 2021. 6. 1.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2. ◎면 ◇◇리 ㄴ번지의 경우

[표 2] 건축신고 수리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지역	구역	신 고 일	신고수리일	착공일
BN	◎면 ◇◇리 ㄴ	143.89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1. 3. 31.	'21. 4. 6.	'21. 4. 10.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 ▽▽▽▽과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한 143.89㎡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위 [표 2]와 같이 건축신고로 부적정하게 수리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고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2020. 12. 23. 주식회사 ♥♥(대표 BO)과 공사계약(574,933천 원)을 체결하고, ‘◆◆ 건축공사’를 2020. 12. 29. 착공하였다.

1. 공사하도급 계약 검토 부적정

[표] 공 사 현 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건축공사	버스정류장 신축 등	2020. 12. 29. ~ 2021. 9. 10.	1,004,526	574,933	429,593	주식회사 ♥♥ BO	

가.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검토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때에는 하도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울릉군 ▼▼▼▼▼과에서는 ‘◆◆ 건축공사’ 착공 후 2021. 5. 3.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도급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검토하였다.

하도급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전문면허 등록업체로서 하도급 계약 공정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되는 철골공사(정당면허: 강구조물공사업)는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의 강구조물에 대한 전문면허 미보유를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합하다는 공문을 울릉군 ○○과로 부적정하게 통보하였다.

나. 하도급 계약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검토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하도급 계약 내역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은 상기 3개 항목에 대한 비용 3,472천 원을 미반영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울릉군 ▼▼▼▼▼과에서는 이를 검토하면서 보완이나 시정 없이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2.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미이행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호)에 따르면 시스템 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강관비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기둥간격 1.5m ~ 1.8m, 띠장 및 장선 간격 1.5m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59조에 따르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도록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차가새로 보강하고, 강관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건축감리용역 계약서류 중 과업지시서 제2장 공사감리업무 부분을 살펴보면 감리는 공사착공 후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공자는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비계를 조립하여야 하고, 감리는 건설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시공 중 결함이나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 및 안전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 사업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시스템 비계로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도,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거나 실정보고 없이 강관비계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리고 비계 수평재(띠장) 설치 간격 미준수, 작업발판 일부 누락, 강관비계 교차가새 미보강, 비계기둥 받침철물 및 밑둥잡이 미설치 등 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리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관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군 ▼▼▼▼▼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었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맞지 않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읍 □□리 ㄱ번지 숙박시설(무단증축,용도변경) 외 18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행강제금 총 129,95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반 건축물의 무질서에 따른 환경 악화를 초래하였고, 적법하게 건축하고 있는 행위자와의 형평성 등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게 되었다.

[표]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위 치	적발일	건축주	용도	위반내용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						129,950
1	바다읍 바다리 ㄴ	2010. 10. 13.	-	숙박시설	무단증축 용도변경 (166.86㎡)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14,160
2	☉면 ☉☉리 ㄷ	2018. 7. 12	-	주택	무단증축 (88.98㎡)	-1차 : 2018. 8. 13. -2차 : 2018. 11. 20.	5,910
3	☉면 ☉☉리 ㄹ	2018. 6. 29	-	주택 휴게음식점	무단증축 (130.93㎡)	-1차 : 2018. 7. 30. -2차 : 2018. 10. 31.	12,040
4	바다읍 바다리 ㅁ	2018. 8. 21.	-	주택 (창고)	무단증축 (21.06㎡)	-1차 : 2018. 9. 20. -2차 : 2018. 10. 22.	2,940
5	▲면 ▲▲리 ㅂ	2018. 10. 16.	-	주택	무단증축 (51.79㎡)	-1차 : 2018. 11. 15. -2차 : 2018. 12. 10.	2,360
6	▲면 ▲▲리 ㅅ	2019. 4. 10.	-	창고	신축 (63.04㎡)	-1차 : 2019. 5. 9. -2차 : 2019. 6. 7.	1,800
7	바다읍 바다리 ㅈ	2019. 5. 30.	-	창고	신축 (68.2㎡)	-1차 : 2019. 7. 1. -2차 : 2019. 8. 16.	2,760
8	바다읍 바다리 ㅊ	2019. 6. 17.	-	농가창고	무단증축 (64.92㎡)	-1차 : 2019. 7. 17. -2차 : 2019. 8. 16.	2,000
9	바다읍 ▲▲리 ㅋ	2019. 6. 17	-	주택	무단증축 (44.84㎡)	-1차 : 2019. 7. 17. -2차 : 2019. 8. 16.	5,000
10	바다읍 바다리 ㅌ	2019. 10. 23.	-	주택	신축 (58.8㎡)	-1차 : 2019. 11. 22. -2차 : 2019. 12. 16.	460
11	☉면 ☉☉리 ㅍ	2019. 11. 5.	-	주택	무단증축 (75.01㎡)	-1차 : 2019. 12. 5. -2차 : 2020. 1. 10.	2,520
12	바다읍 바다리 ㅎ	2019. 11. 21.	-	숙박시설	무단증축 (26.32㎡)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590
13	바다읍 바다리 ㄱ	2019. 11. 21.	-	숙박시설	무단증축 용도변경 (98.35㎡)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6,430
14	바다읍 바다리 ㄴ	2019. 11. 21.	-	숙박시설	무단증축 (60.45㎡)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920
15	바다읍 바다리 ㄷ	2019. 11. 21.	-	숙박시설 창고	무단증축 용도변경 (289.49㎡)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17,210
16	바다읍 바다리 ㄹ	2019. 11. 21.	-	숙박시설	무단증축 (80.25㎡)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6,300

연번	위 치	적발일	건축주	용도	위반내용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17	마마음 아파트	2019. 11. 21.	-	숙박시설 창고	무단증축 (141.64㎡)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15,790
18	마마음 아파트 그외1	2019. 11. 21.	-	숙박시설	무단증축 용도변경 (193.19㎡)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20,220
19	마마음 아파트	2019. 11. 21.	-	소매점 주택	무단증축 용도변경 (274.95㎡)	-1차 : 2019. 12. 23. -2차 : 2020. 1. 31.	10,540

조치할 사항 율령준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